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안건번호	제2016 - 08 - 031호
안 건 명	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피 심 인	
의결연월일	2016. 2. 4.

주 문

- 1. 피심인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,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행위,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 및 출국·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- 2. 피심인은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4단×10cm 또는 5단×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공표한다. 이때,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3.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,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- 가.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킬 때에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

거소신고증, 여권 등, 이하 '신분증')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 및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나. 또한, 내·외국인 정보인증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철저히 검사하고, 특히 외국인의 성명·외국인등록번호·거소신고번호·여권번호·발급일자·생년월일·국적코드·체류기간등 외국인 정보인증 필수 정보값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지 않도록 한다.

다. ①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양도자, 양수자 모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각 서명을 받아야 하며,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② 번호변경을 할 때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라.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개인 및 법인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하여서는 아니되고, 이용약관에 따른 초과 개통이 가능한 경우라도 반드시 우량고객기준(신용도,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가능 회선 수) 등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
마.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외국인이 출국·사망·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령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

- 가입시 확인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안되며, 출국· 사망을 알게 된 때에는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.

4.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.

"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, 미성년자 등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,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하여 판매하지 않는다"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한다.

- 5.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6.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7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.

가. 금 액: 25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1. 일반현황

○ 피심인은 「전기통신사업법」(이하 '사업법') 제5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로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- '15. 11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75,927명이다

※ 자료출처: 미래창조과학부

2. 사실조사 결과

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- 가.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
- '14. 8월부터 '15. 2월까지 우리나라를 출국한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그 외국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6회선의 계약을 체결하였다.
- 나.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한 행위
- '15.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37회선을 임의로 명의 변경하여 번호이동하였다.
- 다.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
- '13. 12월부터 '15. 9월까지 개인 명의로 1,106회선, 법인명의로 42회선, 총 1,148회선을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 수(개인 4회선, 법인 5회선)를 초과(개인 : 최소 2회선 ~ 최대 82회선, 법인 : 최소 3회선 ~ 최대 30회선)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시켰다.
 - 라. 출국·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
- '14. 1월부터 '15. 8월까지 출국·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181 회선을 해지시키지 않은 채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였다.

3. 위법성 판단

가. 관련 법 규정

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

[별표 4] 5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중 나목에서는 1)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, 3)법령이나 이용약과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.

< 관련 규정 >

- ◆ 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 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5. 이용약관(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을 말한다) 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- ◆ **같은법 시행령 제42조**① [별표 4] 5. 나.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- 1)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 - 3)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
나. 위법성 판단

- 1)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
- 피심인이 '14. 8월부터 '15. 2월까지 우리나라를 출국한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그 외국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6회선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,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4] 제5호 나목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.
 - 2)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한 행위
- 피심인이 '15.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37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하여 번호이동한 행위는,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로서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[별표4] 제5호 나목 제1호 및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.

- 3)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
- 피심인이 '13. 12월부터 '15. 9월까지 개인 명의로 1,106회선, 법인명의로 42회선, 총 1,148회선을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 수(개인 4회선, 법인 5회선)를 초과(개인 : 최소 2회선 ~ 최대 82회선, 법인 : 최소 3회선 ~ 최대 30회선)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,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4] 제5호 나목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.
 - 4) 출국·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
- 피심인이 '14. 1월부터 '15. 8월까지 출국·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 전화 181회선을 해지시키지 않은 채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는 행위는,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[별표4] 제5호 나목 제1호 및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.

4. 시정조치 명령

< 관련 규정 >

- ◆ 사업법 제52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- 6. 금지행위의 중지
 - 7.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
 - 9.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
 - 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◆ **같은 법 시행령 제44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)**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
 - 2.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
 - 3.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

가. 위반행위의 중지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,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,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행위,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 및 출국·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한다.

나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×10cm 또는 5단×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. 이때,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
공표문안

(주)앤알커뮤니케이션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
저희 회사((주)앤알커뮤니케이션)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①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, ②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한 후 번호이동하는 행위, ③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 및 ④출국·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가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50조제1항제5호를 각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2016년 월 일

대표이사 ㅇㅇㅇ

다.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,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
- 1)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킬 때에는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 및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2) 또한, 내·외국인 정보인증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철저히 검사하고, 특히 외국인의 성명·외국인등록번호·거소신고번호·여권번호·발급일자·생년월일·국적코드·체류기간등 외국인 정보인증 필수 정보값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지 않도록 한다.
- 3) ①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양도자, 양수자 모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각 서명을 받아야 하며,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② 번호변경을 할 때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4)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개인 및 법인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용약관에 따른 초과 개통이 가능한 경우라도 반드시 우량고객기준 (신용도,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가능 회선 수)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5)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외국인이 출국·사망·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령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
- 가입시 확인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안되며, 출국· 사망을 알게 된 때에는 회선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.

라. 이용약관의 변경

"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미성년자 등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하며,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하여 판매하지 않는다"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한다.

마.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바. 시정명령 이행 결과의 보고

피심인은 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5. 과징금 부과

< 관련 규정 >

- ◆ 사업법 제53조(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)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(중략)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◆ **같은 법 시행령 제46조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**)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 -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- ◆ **같은 법 시행령 제47조(과징금의 산정방법)**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2.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
- ◆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-98호) 제3조(과징금 부과상한액) ②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,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,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. 제7조(필수적 가중) ①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. 제8조(추가적 가중・감경)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, 위반행위의 고의・과실 여부,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,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금지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,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・감경할 수 있다.

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.

가. 과징금 부과상한액

사업법 시행령 제46조, 제47조 및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 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-98호, 이하 '과징금 부과 세부기준'이라 한다)제3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8억원이다.

나.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

- 알뜰폰사업 초기단계('12년 본격 사업 개시), 알뜰폰사업자의 운영상황 및 시 스템 등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"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"로 본다.
-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업규모, 매출액 등에 대한 형평 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1천만원 ~ 5천만원으로 정하고,

위반행위 및 위반건수 등을 고려하여 ①10,000회선 초과, ②5,000회선 초과, ③1,000회선 초과, ④100회선 초과, ⑤10회선 초과 (10회선 이하는 과징금 부과 유예) 등 총 5단계로 차등 적용한다.

다.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

- 1)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
-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정되고, 위반행위의 건수가 10회선 미만으로 경미하므로 금회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를 유예한다.
 - 2) 해지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번호이동한 행위

○ 기준금액

위반의 내용과 정도 및 위반행위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"중대성이약한 위반행위"에 해당하고 위반건수가 10회선 초과 100회선 이하이므로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한다.

○ 과징금의 결정

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, 위반기간 및 조사 협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적용한다.

위반행위의 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에 필수적가중 10%를 가산하고,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(30%)으로 판단되며 조사에적극 협조(20%)하였으므로 추가적 감경을 적용하여, 기준금액 1천만원에 10%를가산한 금액에서 50%를 감경한다.

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5백 5십만원으로 결정한다.

3)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

○ 기준금액

위반의 내용과 정도 및 위반행위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"중대성이약한 위반행위"에 해당하고 위반건수가 1,000회선 초과 5,000회선 이하이므로 기준 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한다.

○ 과징금의 결정

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, 위반기간 및 조사 협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적용한다.

위반행위의 기간이 12개월 초과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30%를 가산하고,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(30%)으로 판단되며 조사에 적극 협조 (20%)하였으므로 추가적 감경을 적용하여, 기준금액 3천만원에 30%를 가산한 금액에서 50%를 감경한다.

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1천 9백 5십만원으로 결정한다.

- 4) 출국·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
- 정상적으로 가입한 외국인이 서비스 이용 중 출국·사망·체류기간 만료 여부를 사업자가 미리 인지할 수 없었던 점,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'15년 제20차 위원회의결('15.5.13.)시 과징금 부과를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한다.

6. 결론

상기 피심인의 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위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- 위원장 최성준(인)
- 부위원장 김 재 홍 (인)
- 위 원 김 석 진 (인)
- 위 원 이 기 주 (인)
- 위 원 고 삼 석 (인)